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13

발의연월일: 2021. 10. 21.

발 의 자:조명희·金炳旭·김형동

박대수 • 박덕흠 • 백종헌

안병길 • 유의동 • 이태규

최승재 · 추경호 · 홍문표

황보승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 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제공된 체납정보는 개인별 신용등급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며 향후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분할납부 중인 경우 체납 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 조의2제1항 단서).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 및 제82조제 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등 자료 제공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등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제81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보험	자료의 제공) ①
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	
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	
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	
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	
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	
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u>경우</u> , 그	<u>경우 및</u>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	<u> 승인받은 경우</u>
니하다.	<u>.</u>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